[붙임 1]

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 및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안내

1. 재무제표 제출

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'23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동일하여야 하며, 세무대리인 (세무사, 공인회계사 등)이 확인(명판 및 간인·천공)한 원본 제출(※ 사본제출 불가)

(1) **외부감사대상 건설사업자**는 「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**회계감사를 받은 "감사보고서"** 제출

(2) **자체기장 등으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**는 (가) 또는 (나)에 의거 제출

- (가) :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[국세청 고시 2007-30호] ⇒ 세무조정계산서 (재무제표 포함 세무사 날인 필)
- (나) :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법인 ⇒ 업체에서 기장한 재무제표 (대표자 날인 및 간인)와 공문서(자체기장,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며 위·변조시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 포함)

(3) **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업체는** 직전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및 2023년도 부가가치세(비)과세표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2. 기술개발투자비 신고(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)

(1) 2023년도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서 원본(서식 9-1)

(2)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지출확인서 원본(서식 9-2, 세무대리인 확인필)

(3) 연구·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원본(세무대리인 확인 필수) 또는 홈텍스에서 발급한 세무조정계산서 [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(1), (2)]

(4) 세무대리인(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) 등록증 사본 1부

(5)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[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] 사본 1부

- 자체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

(6) 연구개발비 중 "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"가 있는 경우 용역계약서 사본 1부

3. 통합실적관리시스템(재무제표) 입력·전송 방법

(1)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의 담당자 관리(담당정보-재무제표) 입력 및 저장

(2) 재무제표항목(진단기관·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·원가명세서) 입력 후 저장

(3) 기술개발투자비현황 입력(해당업체에 한함) 입력 후 저장

(4) 통계청 건설업 통계조사표(결산사항) 입력 후 저장

(5)「신고확정」→ '내용확정'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완료

⇨ **재무제표 원본 '등기' 우편 발송(※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)**

※ (협회 방문시) 재무제표 입력·저장 → 신고확정 후, 원본 지참하여 협회 제출